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심사보고서

1994. 6. 17
 行政財務委員會

1. 審査經過

- 가. 提案日字 및 提案者: 1994年 6月 3日 區廳長提出
- 나. 回附日字: 1994年 6月 7日 回附
- 다. 上程日字: 第25回 永登浦區議會(臨時會)第1次 委員會(1994年 6月 15日) 上程議決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財務局長 朴忠會)

가. 提案理由

○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94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나. 主要骨子

○ 주거용 건물의 담장안에 장기간 점유사용 중인 토지와 도로개설공사 후 발생한 소규모 자투리(유휴)토지를 인접토지 소유주에게 매각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세수증대를 기하고자 함.

3.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趙大顯)

'94. 6. 7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구유지 6필지 64㎡를 7인에게 매각코자 의회에 동의를 요청한 것으로 매각코자하는 내용을 보면

단독 3필지 31㎡와 단독 3필지 126㎡중 33㎡를 분할하여 매각코저 하는 것으로

1) 구유재산 관리계획수립과 의결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에 의거 취득코자하는 재산과 매각코자하는 재산을 매년 계획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추진하는 것으로 94. 1. 19 구유재산 관리계획수립 의결된 것은 취득토지 8필지 1090.7㎡ 건물 315.61㎡이고 매각은 토지 1필지 3㎡뿐이며, 현재까지 매각은 매수신청 있을 때에만 산발적으로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으로 처리해왔고, 이번 상정된 의안 자체도 매수신청에

의거 상정된 필지에 국한하여 매각 처리하겠다고, 의회에 동의를 요청한 것은 '94구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나름대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설득력은 약하다고 사료됨.

2) 구유재산관리계획수립에 있어, 잡종 재산전체를 사전에 현황과악하여 장래의 공물로서 공공용 재산이나 보존재산 등을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과 규모·형상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별도로 재산목록을 작성 비치하여 운영관리하고 매각이 필요한 재산은 사전에 매각할 것을 결정하고 추진하여야지 현재와 같이 매수 신청을 기다리고 매수 신청이 있어야만 신청 토지 매각여부를 검토하므로서, 매수신청이 있어도 적기에 매각 하지 못하고, 행정절차를 거치느라고 매각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구 재정세입 계획에도 차질을 초래하고 있어, '94구유재산관리계획 수립자체를 전면적으로 재정비, 조속히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일괄상정하여 의결을 얻어 계획적이고, 투명성과 신속성있는 매각 사무가 집행되어야 할 것임.

3) 금회 상정된 '94구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동의(안)은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계획변경으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협의적·법률적·행정적 의미에서 「변경이란 용어는 당초 결정 사항을 전제하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금회 상정안은 '94구유재산관리계획의 추가계획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상정된 안건은 '94구유재산 관리계획의 추가계획으로보고, 구청장이 매각코자하는 토지에 대하여 현장 조사결과와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각 의결 요청 토지실태와 검토의견>

연번	재 산 의 표 시				현장여건 및 실태	검 토 의 견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1	영등포1동	620-4	대지	1	· B=12m도로에 접합 · 매각동의 요청 토지와 연결한 토지 · 턱파기 공사중에 있음	· 매각의결요함 ※이유 규모·형상등으로 보아 활용가치 없음.
2	〃	620-111	대지	3/33	· B=12m도로에 접합 · 현 도로지면에서 2m이 상높이 절개지 형태	위와같음
3	〃	620-369 620-111	대지 〃	4/6 6/33	위와 같음	위와 같음
4	〃	620-369	대지	2/6	위와 같음	위와 같음
5	신길2동	192-216	대지	14	· B=4m도로에 접합 · 신길2동 192-123건축주가 담장설치 무단점유, 앞마당으로 사용	위와같음
6	신길3동	269-4	대지	16	· B=6m도로에 접합 · 신길3동 269-13 토지와 연결 나대지 상태	위와같음
7	대림1동	906-112	대지	18/48	· B=8~10m도로에 접합 · 대림동 906-69토지구담장 설치무단 점유 정원으로 사용	· 매각의결유보

※7번 토지매각의결 유보 사유

- ① 가각 정리하여 도로로 활용 가치가 높다고 봄
- ② 48㎡는 현재 도로로 일부 이용되고 있고, 매각코저하는 토지와 잔여지로 3등분되나 잔여지는 규모 형상으로 보아 906-51토지구 측면에서 효용가치가 적어 향후 매각이 어렵다고 보여짐
- ③ 토지전체를 보고 검토할 때 특정인의 사익측면 보다는 공익차원에서 토지 48㎡전체를 도로로 활용함이 도로선 형상 바람직해 심도 있는 재검토 요함.

4. 審査結果

· 영등포1동 620-4의 5건은 매각同意하고,
대림1동 906-112대지 18㎡는 매각을 보류하기로 의결함.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 안	236
번호	

제출년월일 : 1994. 6.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의회 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2. 주요골자

주거용 건물의 담장안에 장기간 점유사용중인 토지와 도로개설공사 후 발생한 소규모 자투리(유유)토지를 인접토지 소유주에게 매각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세수증대를 기하고자 함.

※재산목록 별첨

구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 수	수량	금액	건 수	수량	금액	건 수	수량	금액	
처	계	토지			7건6필지	64	63,520	7건6필지	64	63,520	
분	매각	토지			7건6필지	64	63,520	7건6필지	64	63,520	
기	타										

1994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

관리청명 : 영등포구

회 계 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매각대상 수 량	과표 또는 평가액	매각시기	매 각 사 유	매수희망자 주소·성명	비고
	지목	소재지	일단의수량						
1	대지	영등포1동 620-4	1	1	987	하반기	도로개설 공사후 자투리 토지를 인접대지 소유자에게 매각	성남, 분당, 수내 55 파크타운 137-1604 이근영	
2	〃	영등포1동 620-111	33	3	2,961	하반기	도로개설 공사후 자투리 토지를 인접대지 소유자에게 매각	영등포구 영등포동 620-122 강순자	
3	〃	영등포1동 620-111 외1	39	10	9,870	하반기	도로개설 공사후 자투리 토지를 인접대지 소유자에게 매각	영등포구 영등포동 620-108 유병윤	
4	〃	영등포1동 620-369	6	2	1,974	하반기	도로개설 공사후 자투리 토지를 인접대지 소유자에게 매각	영등포구 영등포동 620-109 이종근	
5	〃	신길1동 192-216	14	14	12,628	하반기	도로개설 공사후 자투리 토지를 인접대지 소유자에게 매각	영등포구 신길동 192-123 양태훈	
6	〃	신길3동 269-4	16	16	14,400	하반기	도로개설 공사후 자투리 토지를 인접대지 소유자에게 매각	영등포구 신길동 269-13 안성태	
7	〃	대림1동 906-112	48	18	20,700	하반기	신청인의 주거용 건물의 담장안에 위치	영등포구 대림동 906-69 김문정	

재산위치도·도시계획확인원등 관련공부 목록

구 분	목	비 고
매 각-1)	도로개설 공사후 자투리 토지를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	
매 각-2)	도로개설 공사후 자투리 토지를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	
매 각-3)	도로개설 공사후 자투리 토지를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	
매 각-4)	도로개설 공사후 자투리 토지를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	
매 각-5)	도로개설 공사후 자투리 토지를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	
매 각-6)	도로개설 공사후 자투리 토지를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	
매 각-7)	사유 주택의 담장안에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	

연 번 : 1

(매 각 대 상 재 산 현 황)

1. 재산의 표시 및 매수신청인

(단위m²)

재 산 의 표 시			매 각 대 상 면 적	매 수 신 청 인		비 고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주 소	성 명	
영등포1동 620-4	대지	1	1	성남, 분당, 수내동 55번지 파크 타운 137-1604	이 근 영	

2. 재산관리현황

관 리 상 태(현용도)	토 지 의 특 성	비 고
도로개설 공사후 자투리(유휴)토지	일반주거지역으로 12m도로에 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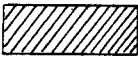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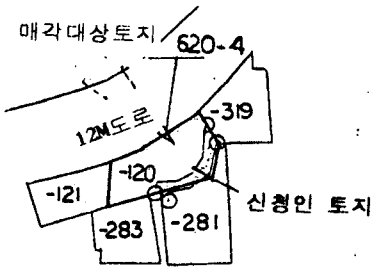

3. 매 각 사 유

- 상기 구유재산은 매수신청인(이근영)의 대지 앞에 위치 하고 있음
- 도로개설공사 후 자투리(유휴)토지
- 신청인이 매입후 건물 신축

4. 처 분 근 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7호

5. 현 황 도

<p><u>범 례</u></p> <p>공유지분</p> <p>점유부분 : (매각부분)</p> <p></p> <p>담장선 : _____</p>		
--	---	--

연 번 : 2

(매 각 대 상 재 산 현 황)

1. 재산의 표시 및 매수신청인

(단위㎡)

재 산 의 표 시			매 각 대 상 면 적	매 수 신 청 인		비 고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주 소	성 명	
영등포1동 620-111	대지	33	33중3	영등포동 620-122	강 순 자	

2. 재산관리현황

관 리 상 태(현용도)	토 지 의 특 성	비 고
도로개설 공사후 자투리(유휴)토지	일반주거지역으로 12m도로에 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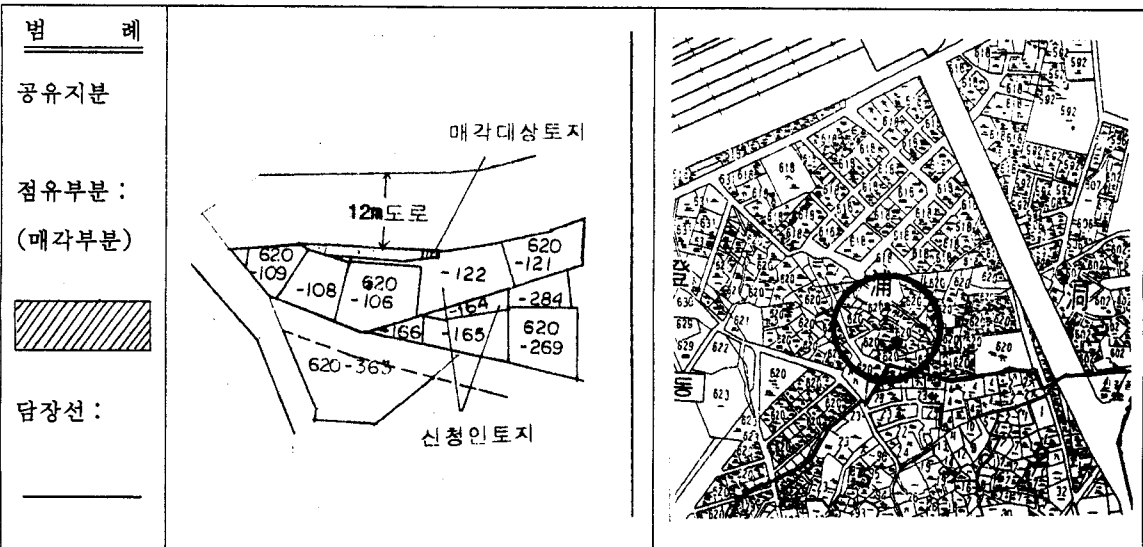
3. 매 각 사 유

- 상기 구유재산은 매수신청인(강순자)의 대지 앞에 위치 하고 있음
- 도로개설공사 후 자투리(유휴)토지
- 신청인이 매입후 건물 신축

4. 처 분 근 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7호

5. 현 황 도



연 번 : 3

(매 각 대 상 재 산 현 황)

1. 재산의 표시 및 매수신청인

(단위㎡)

재 산 의 표 시			매 각 대 상 면 적	매 수 신 청 인		비 고
소	재 지	지 목		주 소	성 명	
영등포1동	620-369	대지	6	영등포동 620-108	유 병 윤	
	620-111		33			

2. 재산관리현황

관 리 상 태(현용도)	토 지 의 특 성	비 고
도로개설 공사후 자투리(유휴)토지	일반주거지역으로 12m도로에 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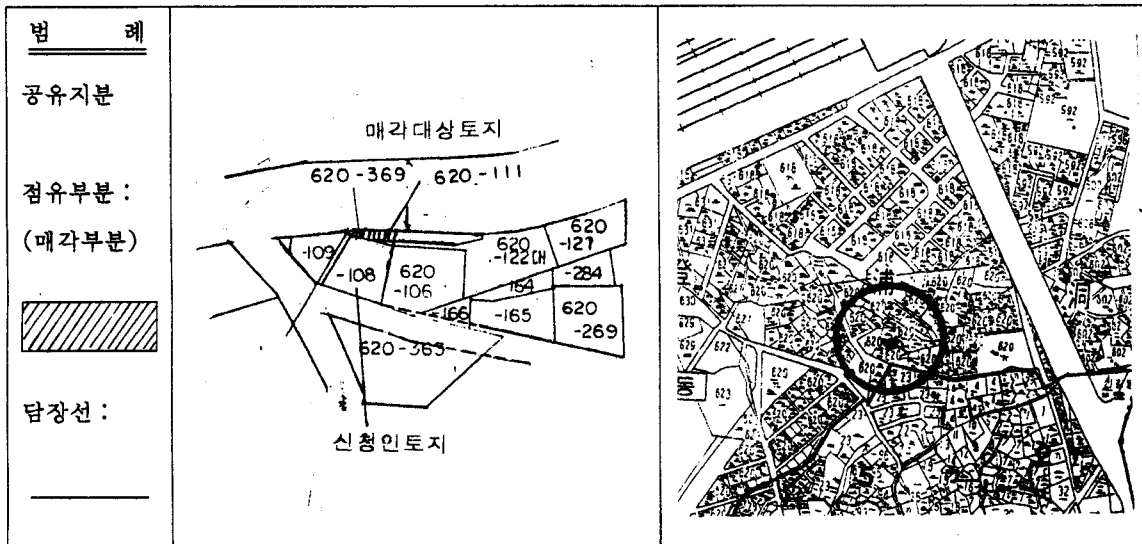
3. 매 각 사 유

- 상기 구유재산은 매수신청인 (유병윤)의 대지 앞에 위치 하고 있음
- 도로개설공사 후 자투리(유휴)토지
- 신청인이 매입후 건물 신축

4. 처 분 근 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7호

5. 현 황 도



연 번 : 4

(매 각 대 상 재 산 현 황)

1. 재산의 표시 및 매수신청인

(단위㎡)

재 산 의 표 시			매 각 대 상 면 적	매 수 신 청 인		비 고	
소	재	지		주	소		성
영등포1동	620-369	대지	6	6중2	영등포동 620-109	이 종 근	

2. 재산관리현황

관 리 상 태(현용도)	토 지 의 특 성	비 고
도로개설 공사후 자투리(유휴)토지	일반주거지역으로 12m도로에 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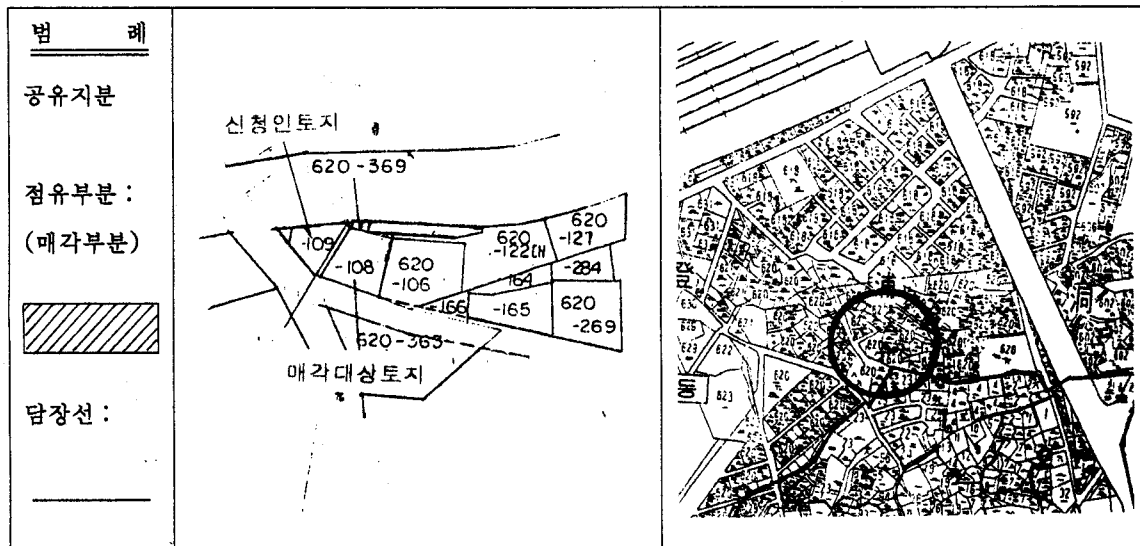
3. 매 각 사 유

- 상기 구유재산은 매수신청인 (이종근)의 대지 앞에 위치 하고 있음
- 도로개설공사 후 자투리(유휴)토지
- 신청인이 매입후 건물 신축

4. 처 분 근 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7호

5. 현 황 도



연 번 : 5

(매 각 대 상 재 산 현 황)

1. 재산의 표시 및 매수신청인

(단위㎡)

재 산 의 표 시			매 각 대 상 면 적	매 수 신 청 인		비 고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주 소	성 명	
신길2동 192-216	대지	14	14	신길2동 192-123	양 태 훈	

2. 재산관리현황

관 리 상 태(현용도)	토 지 의 특 성	비 고
도로개설 공사후 자투리(유휴)토지	일반주거지역으로 4m도로에 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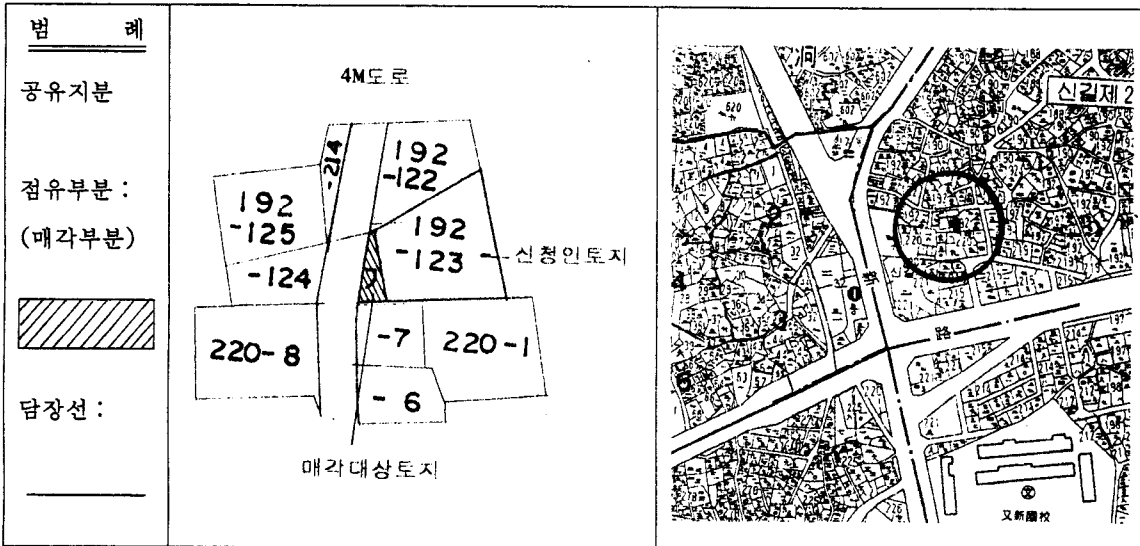
3. 매 각 사 유

- 상기 구유재산은 매수신청인 (양태훈)의 대지와 접하고 있음
- 도로개설공사 후 자투리(유휴)토지
- 신청인이 건물 신축

4. 처 분 근 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7호

5. 현 황 도



연 번 : 6

(매 각 대 상 재 산 현 황)

1. 재산의 표시 및 매수신청인

(단위㎡)

재 산 의 표 시			매 각 대 상 면 적	매 수 신 청 인		비 고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주 소	성 명	
신길3동 269-4	대지	16	16	신길2동 269-13	안 성 태	

2. 재산관리현황

관 리 상 태(현용도)	토 지 의 특 성	비 고
도로개설 공사후 자투리(유휴)토지	일반주거지역으로 6m도로에 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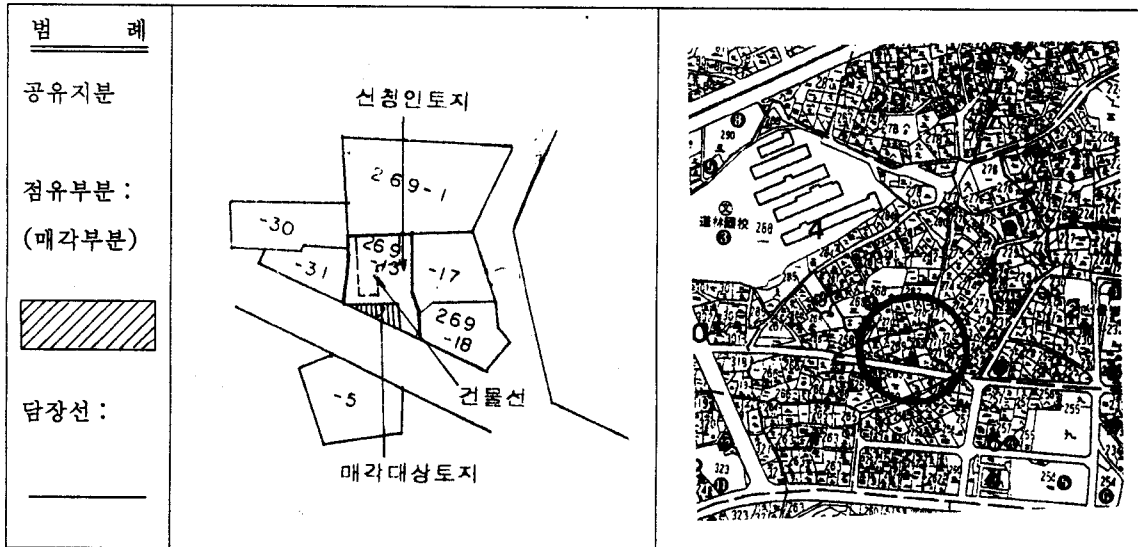
3. 매 각 사 유

- 상기 구유재산은 매수신청인(안성태)의 대지 앞에 위치 하고 있음
- 도로개설공사 후 자투리(유휴)토지
- 신청인이 매입후 건물 신축

4. 처 분 근 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7호

5. 현 황 도



연 번 : 7

(매 각 대 상 재 산 현 황)

1. 재산의 표시 및 매수신청인 (단위㎡)

재 산 의 표 시			매 각 대 상 면 적	매 수 신 청 인		비 고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주 소	성 명	
대림1동 906-112	대지	48	48 중 18	대림동 906-69	김 문 정	

2. 재산관리현황

관 리 상 태(현용도)	토 지 의 특 성	비 고
도로개설 공사후 자투리(유휴)토지	일반주거지역으로 10m도로에 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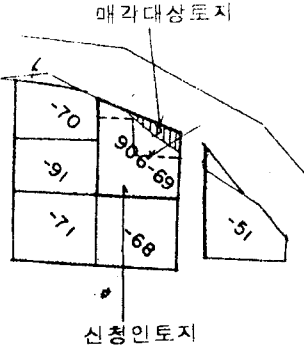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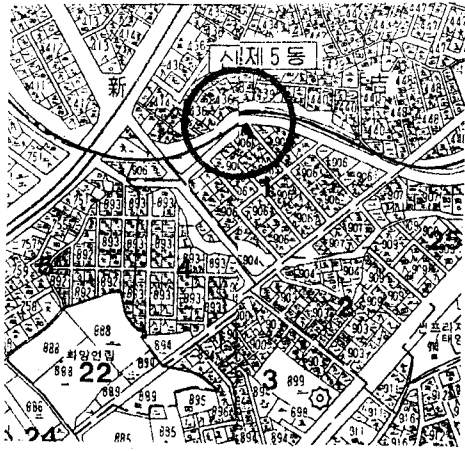
3. 매 각 사 유

- 상기 구유 재산은 매수신청인(김문정)의 주거용 건물 담장안에 점유
- 20년 이상 점유 사용하고 있음(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 신청인이 매입후 건물 신축

4. 처 분 근 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4호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제1호

5. 현 황 도

<p><u>범 례</u></p> <p>공유지분</p> <p>점유부분 : (매각부분)</p>  <p>담장선 : _____</p>		
---	---	--